

발신 :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8층 AMC사업2실
수신 : 박용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주택 경매 신청예정 통지서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2024년 9월 26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아래 대출금에 대하여 2025.2.12.일자(경매예정일)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 행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출금 내용

[2025년 1월 20일 현재]

(단위 : 원)

대출과목	원 금	이 자	합 계	적용이율
<가계>일반자금대출	225,000,000	15,791,677	240,791,677	8.61%

※ 경매신청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경매비용) 별도

2. 담보 내용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면 적 : 건물 84.1449㎡ / 대지권 30554분의 38.8023
근저당권 내용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2018년 10월 10일 접수 제138468호

채권최고액 금 247,500,000원

채 무 자 박용

※ 최초 약정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대출과목 건에 대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동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 기한 예시 참고

경매신청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 수령한 경우 :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까지

경매신청예정일 전 10영업일 도과하여 통지 수령한 경우 :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되는날까지

2025년 1월 20일

이 우편물은 2025-01-20
제 310191703121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영등포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8층 AMC사업2실
대표자 이 사 김 명 배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최초 약정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계약 건 한정)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담당 :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담당자 과장 이준훈 (02-6268-8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자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권자)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권자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자)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당사 대출금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발신 :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8층 AMC사업2실

수신 : 박용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주택 경매 신청예정 통지서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2024년 9월 26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아래 대출금에 대하여 2025.2.12.일자(경매예정일)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 행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출금 내용

[2025년 1월 23일 현재]

(단위 : 원)

대출과목	원 금	이 자	합 계	적용이율
<가계>일반자금대출	225,000,000	15,950,903	240,950,903	8.61%

※ 경매신청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경매비용) 별도

2. 담보 내용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면 적 : 건물 84.1449㎡ / 대지권 30554분의 38.8023

근저당권 내용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2018년 10월 10일 접수 제138468호

채권최고액 금 247,500,000원

채 무 자 박용

※ 최초 약정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대출과목 건에 대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동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 기한 예시 참고

경매신청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 수령한 경우 :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까지

경매신청예정일 전 10영업일 초과하여 통지 수령한 경우 :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되는날까지

이 우편물은 2025-01-23
제 3102738073507호에 의하여
내용중요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2025년 1월 23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8층 AMC사업2실

대표자 이 사 김 명 배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최초 약정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계약 건 한정)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담당 : 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담당자 과장 이준훈 (02-6268-8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자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권자)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권자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자)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당사 대출금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2023. 01. 23
07305